

학교법인 혁제학원 정관

2001.07.09. 제정

2013.05.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영어교육전문가 양성인 교육목표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혁제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49-11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 사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에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되어야 하며, 이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삭제]

[이하 종전 제13조~제17조 전체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개방이사를 포함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7인

감사 2인

제22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2조의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1. 이사 4년
 2.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삭제]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선임된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②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삭제]
- ⑤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④[삭제]

제24조의3(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에 둔다.

-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

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제5항의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 24조의2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삭제]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회

제35조의2(대학평의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5조의3(평의회의 구성) 평의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포함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학교 직원 4명
3. 학생 2명
4.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제35조의4(평의원의 위촉) ①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②교내 구성단위 중 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추천 하는 자를 위촉한다.

③동문 중에는 선임된 공식 대표가 있으면 그 중에서, 공식 대표가 없다면

학교의 장이 임의 지정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영어교육사업
2. 임대사업
3. 매점
4. 학원사업
5. 수익용 토지에 대한 조립사업
6. 위 각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체의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IGSE 영어교육

제37조의2(사업체의 주소) 제37조의 사업체의 사무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IGSE 영어교육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9-13번지 우용빌딩 308호

제38조(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1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2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규 채용되는 교수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조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의 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1. 교 수 정년까지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4년
4. 전임강사 2년

5. 조 교 1년

③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교무위원 및 기타교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임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44조(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①대학에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 교원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 실적 등을 심사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④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대학의 교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2관 신분보장

제45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지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 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46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1.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5조 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5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재직 중 2회에 한한다.
7.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5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8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5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5조 제2호 내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5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51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의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3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로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단, 학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명예퇴직) ①교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예산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5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건학이념의 구현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7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8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61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62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회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의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 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7조(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0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1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2조(징계사유의 시효) ①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7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75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6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제

청이 있어야 한다.

제77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신분보장) ①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직원의 정년은 직원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1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국장을 둘 수 있다.

③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 및 관재과를 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82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삭제]

제83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무처와 행정실을 둔다.

②교무처에는 처장을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행정실에는 팀장

을 두며 팀장은 일반직으로 보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부속기관) ①대학교에 국제교사교육원, 도서관, 평생교육원, 출판부, 한국원격교사교육원 및 영어교육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부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의2(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절 정원

제85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86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조선일보에 공고한다.

제8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8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안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비 고
이사장	윤 균	1944년 10월 20일	4년	2001. 7. 1~2005. 6.30
이 사	문 용	1930년 10월 29일	4년	2001. 7. 1~2005. 6.30
이 사	안 영 수	1942년 12월 20일	2년	2001. 7. 1~2003. 6.30
이 사	박 경 일	1944년 6월 19일	2년	2001. 7. 1~2003. 6.30
이 사	J.D.Ramirez	1943년 11월 4일	2년	2001. 7. 1~2003. 6.30

이 사	J.L.Eldredge	1935년 5월 3일	4년	2001. 7. 1~2005. 6.30
이 사	최 숙 자	1944년 10월 19일	2년	2001. 7. 1~2003. 6.30
감 사	이 현 중	1951년 2월 20일	2년	2001. 7. 1~2003. 6.30
감 사	박 준 서	1961년 7월 26일	1년	2001. 7. 1~2002. 6.30

제89조(재산출연자의 정관기재) 이 법인의 설립당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재산을 출연한 자와 이 법인 설립 이후 출연 또는 기부 당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의 10%이상을 출연 또는 기부한 자는 그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금액 및 사유 등을 정관의 [별표3] ‘출연재산내역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전에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 직원 정원	
총 계	5명
일반직계	5명
2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별표 2]

대학 일반 직원 정원	
총 계	21명
일반직계	21명
2급	1명
3급	1명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

[별표 3] 출연재산 내역표

성명	생년월일	출연재산 내역 (부동산 소재지)	평가 기준	평가 금액	출연 의사	출연일자
1) 법인 설립당시에 재산을 출연한 자						
2) 법인 설립이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의 10% 이상을 출연한 자						